

# 2022 부산 관광 스타기업 선정 공고

부산 지역의 지속 성장 가능한 유망 관광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스케일업 (Scale-Up) 할 수 있도록 육성·지원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산 대표 관광 스타기업 선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5. 24. 부산관광공사 사장

## 1. 공모개요

- 공 모 명: 2022 부산 관광 스타기업 선정 공모
  - 심사내용: 관광사업 또는 관광분야 융복합 콘텐츠를 활용한  
주요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
  - 선정규모: 5개 기업
  - 인증기간: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
  - 주요혜택
    - 부산시장 명의 스타기업 멤버십 인증서 및 현판 수여
    - 스케일업 지원금 1천만원 지급(1차연도)
    -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보육 프로그램 및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
    - 스케일업 패키지 제공(2차연도)
  - 공모절차
    - 접수기간: 2022.5.24.(화) 10:00 ~ 2022.6.13.(월) 17:00까지
    - 발표심사: 2022.6.21.(화)
    - 결과발표: 2022.6.24.(금)
    - 협약체결: 2022.6.29.(수)
- 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## 2. 멤버십 혜택

### ○ 기본 프로그램

구분	내용
스타기업 인증	① 부산시장 명의 멤버십 인증서 및 현판 수여
사업화 자금 지원	② 스케일업 지원금 10백만원 지원
관광기업지원센터 보육 프로그램 참여	③ AC/VC 등 투자자 교류 행사
	④ 기업금융 및 융자 교육
	⑤ 비즈니스 스터디 및 관광 트렌드 교육 제공
	⑥ 유관업계 네트워킹 및 판로개척 지원
	⑦ 산관학 연계 인턴 지원

\*스타기업 인증서 및 사업 지원금은 선정 당해 1회 지급되며

\*보육 프로그램 내용은 향후 사업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### ○ 스케일업 패키지

구분	내용
투자유치 컨설팅	⑧ 투자유치 - IR 컨설팅 및 피칭덱(Pitch Deck) 제작, 스피치 교육
집중 컨설팅 및 보고서 제작	⑨ 지식재산권(IP) - IP 컨설팅 및 IP 분석 보고서 제작
	⑩ 경영컨설팅 - 인사조직, 재무관리 등의 경영 진단 및 경영전략 수립
	⑪ 마케팅컨설팅 - 마케팅리서치, 비즈니스모델 분석, 마케팅전략 수립
디자인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, ICT 솔루션 제작	⑫ 디자인 - 상품디자인, 온·오프라인 홍보 콘텐츠, 모션그래픽 제작 지원
	⑬ 영상 - 홍보/광고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
	⑭ ICT - 홈페이지, 모바일웹,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기술 개발 지원

\*선정 후 2년차에 1천만원 이내 수준으로 1개~2개 항목 선택 지원

\*선정기업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 계약수준 상향 가능

### 3. 신청자격

- 부산시 내 본사가 위치한, 관광사업 또는 관광분야 융복합 사업을 영위중인 『중소기업기본법』에 따른 중소기업
-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부터 **업력 만 3년 이상인** 기업('19.5.23. 이전 개업)
- 최근 3개년도('19년 1월 ~ '21년 12월) 평균 **매출액 3억원 이상인** 기업
-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

### 4. 제출서류

- 제출방법: 이메일 접수 (busantourbiz@naver.com)
  - 제출서류 다운로드: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(<http://busan.tourbiz.or.kr>)
  - 접수마감: 2022.6.13.(월) 17시 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
- 제출서류 목록

제출서류
1. 신청서 대표자날인본(pdf파일)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날인본(pdf파일)
3.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
4. 주요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서 1부(pdf파일)
5. 발표 자료(pptx파일) ※ 공고문상 정성평가 배점내용 모두 포함한 자유양식
6. 사업자등록증
7. 중소기업확인서
8.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
9.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10.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
11. 4대보험 가입자명부(사업장용)
12. 관광사업자등록증/지정증 (해당자에 한함)
13.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기업 인증서(해당자에 한함) 부산관광공사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선정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기타 관광 관련 수상/인증 실적(해당자에 한함)
14. 투자계약서(협약서), 자금 납입증명서

- ※ 접수 마감기한 내 미제출 시 또는 사업계획서 요구양식 미준수 시 심사 제외
- ※ 날인이 없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
- ※ 제출된 서류는 해당 공모 선정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선정 심사 종료 후 파기됨

## 5. 심사기준

- 스타기업 선정 심사는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**정량(30점)평가**를 실시하고,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**정성(70점)평가**를 통해 합계점수 순으로 5개사 선정
- 정량평가 10점 미만 기업은 과락으로 발표심사 제외

정량평가 (30점)		※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	
평가항목	배점	평가자료	발급처
3년 평균 매출액	10점	최근 3년간('19년1월~'21년12월)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	국세청 (홈텍스)
상시 근로자수	5점	4대보험 가입자명부 (사업장용)	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외부 투자유치 실적	5점	1) 투자계약서/협약서, 2) 자금 납입증명서 ※ 1), 2) 모두 제출된 실적만 인정	1)투자회사, 2)은행
관광사업 관련 수상/인증 실적	5점	부산관광공사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선정기업 2점,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 인증기업 2점, 이외 실적은 각 1점씩 인정	정부, 지자체, 지방공기업, 공공기관 등
관광사업자 등록현황	5점	1) 사업자등록증, 2) 『관광진흥법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록증/지정증 (붙임 참조)	1)관할세무서 (홈텍스), 2)관할구청

정성평가 (70점)			
구분	평가항목	배점	평가내용
주요 사업성과	경영성과	20점	- 관광사업 또는 관광분야와 타 분야 융복합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실적 및 성과 ※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시 필수
	지역사회 기여도	10점	- 지역상권 활성화, 고용 창출,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
사업 수행계획	독창성	10점	-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관광사업 아이템의 참신함 정도
	실현가능성	10점	- 사업 운영 및 고도화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
	지속가능성	10점	- 사업의 유지 및 발전 가능성
	관광산업 파급효과	5점	- 사업 수행으로 인해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
	지원금 활용계획	5점	- 자금 활용처, 단계별 이용 계획 등의 타당성

## 6. 유의사항

-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- 접수 마감 후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
- 신청자는 다음 내용들에 해당 되는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**선정 취소 · 향후 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제한 · 지원금 환수**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 -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공고문 붙임 양식 미준수한 경우
  -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,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
  -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제출서류가 모방 및 표절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한 경우
- 사업 지원금 1천만원은 공모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 계획에 의거 기업에서 비용을 선 지출하고 협약 종료일 전에 **지원금 지급 기준**에 따라 지출검증 후 지급
- 선정기업은 공사와 **스타기업 육성 업무협약**을 체결하여야 하며, 검증 결과 공모 시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조치 또는 향후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관광관련 융복합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자로 등록(지정)되지 않은 기업은 『관광진흥법』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 중 타목 ‘**관광지원서비스업**’ 등록 안내
  -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『통계법』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, 운수업, 숙박업, 음식점업, 문화·오락·레저스포츠업, 건설업,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. 다만, 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.
  - 공고 접수마감일 이전 까지 등록(지정) 완료한 경우 정량평가 점수 인정되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은 등록 권장

< 참고 >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(관광사업의 종류)

### 관광진흥법 시행령

[시행 2022. 3. 8.] [대통령령 제32528호, 2022. 3. 8., 타법개정]

문화체육관광부(관광정책과, 관광산업정책과-총괄) 044-203-2814, 2860  
 문화체육관광부(관광산업정책과-관광숙박업, 유원시설업) 044-203-2871, 2868  
 문화체육관광부(융합관광산업과-국제회의업, 카지노업) 044-203-2880, 2886  
 문화체육관광부(관광기반과-여행업) 044-203-2840  
 문화체육관광부(관광개발과-관광지·관광단지) 044-203-2894, 2892

**제2조(관광사업의 종류)** ①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8. 8. 26., 2009. 1. 20., 2009. 8. 6., 2009. 10. 7., 2009. 11. 2., 2011. 12. 30., 2013. 11. 29., 2014. 7. 16., 2014. 10. 28., 2014. 11. 28., 2016. 3. 22., 2019. 4. 9., 2020. 4. 28., 2021. 3. 23.>

1. 여행업의 종류

- 가. 종합여행업: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[사증(査證)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]
- 나. 국내외여행업: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(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
- 다. 국내여행업: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

2. 호텔업의 종류

- 가. 관광호텔업: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·운동·오락·휴양·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(이하 “부대시설”이라 한다)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(業)
- 나. 수상관광호텔업: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- 다. 한국전통호텔업: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- 라. 가족호텔업: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·운동·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- 마. 호스텔업: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,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·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
- 바. 소형호텔업: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·운동·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- 사. 의료관광호텔업: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·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3.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

- 가. 전문휴양업: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(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, 이하 “숙박시설”이라 한다)이나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·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(이하 “음식점시설”이라 한다)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(2)(가)부터 (거)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(이하 “전문휴양시설”이라 한다)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

하는 업

나. 종합휴양업

- (1) 제1종 종합휴양업 :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,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- (2) 제2종 종합휴양업 :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다. 야영장업

- 1) 일반야영장업: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- 2) 자동차야영장업: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라. 관광유람선업

- 1) 일반관광유람선업: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
- 2) 크루즈업: 「해운법」에 따른 순항(順航)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,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

마. 관광공연장업 :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

바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(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(도시지역에서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,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업

- 1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
- 2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가목,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,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

사. 한옥체험업: 한옥(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)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,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4. 국제회의업의 종류

가. 국제회의시설업 :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

나. 국제회의기획업 :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·준비·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

5. 유원시설업(遊園施設業)의 종류

가. 종합유원시설업 :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

- 나. 일반유원시설업 :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
  - 다. 기타유원시설업 :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
6.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
- 가. 관광유홍음식점업: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홍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
  - 나. 관광극장유홍업: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홍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(舞蹈)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
  - 다. 외국인전용 유홍음식점업 :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홍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
  - 라. 관광식당업 :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
  - 마. 관광순환버스업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
  - 바. 관광사진업 :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
  - 사.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·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업
  - 아. 관광펜션업 :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·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  - 자. 관광케도업: 「케도운송법」에 따른 케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  - 차. 삭제 <2020.4.28>
  - 카. 관광면세업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
    - 1) 「관세법」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
    - 2) 「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」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
  - 타. 관광지원서비스업: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「통계법」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, 운수업, 숙박업, 음식점업, 문화·오락·레저스포츠업, 건설업,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. 다만, 법에 따라 등록·허가 또는 지정(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)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.
- ② 제1항제6호아목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